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의 초임호봉 확정 기준을 정비하고, 난임휴직 대상자에 대한 보수 지급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응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호봉경력도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환산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대상 확대 관련 초임호봉 확정방법 정비(안 제8조)

-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이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임호봉 확정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에 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으로 통합

나. 난임휴직 시 보수 지급(안 제28조, 제47조)

- 1)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신설됨에 따라 난임휴직 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신설된 난임휴직의 근거를 명시하여 난임휴직 시 보수 지급방식을 추가
- 다. 2호 경채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경력환산율표 정비(안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 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요하는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 자격요건으로 자격증 소지 전의 경력도 50퍼센트 인정하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2)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 자격요건에 대한 인정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격증 소지 전 경력을 최대 5할 이내에서 호봉경력으로 인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2”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2”로 한다.

별표 16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7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에 응시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9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에 응시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확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제22조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확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 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대신하여</u> ----- ----- ----- ----- ----- ----- ----- ----- ----- ----- --.
1. 2. (생략) ④ ~ ⑥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u>「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u> ----- -----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
 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
 한다. 다만,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
 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7호
 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
 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
 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의2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 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3)의 경력: 100퍼센트 ·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9)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 9)의 경력: 100퍼센트 · 9)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 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5 관련)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만 해당한다)·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체육 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 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 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60퍼센트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나. 유 사 경 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 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 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 일한 연구 분야(1986년 이후의 지도 분야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 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만, 시간강사 등 경력 은 50퍼센트 이내의 범 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 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 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 하여 인정한다.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 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5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 경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 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 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 센트 이내. 다만, 행 정·경영·연구·기 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 정한다.
나)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 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 트 이내
다)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 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 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 센트 이내
마)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 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체육 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 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 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 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 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60퍼센트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나. 유 사 경 력	1) 전문·특수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 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 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 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 한 연구 및 지도 분야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 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 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 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 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 력	· 동일분야 경력: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 퍼센트 이내. 다만, 행 정·경영·연구·과학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 한다.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 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396